2023학년도 1학기

휴학 · 복학 신청 안내

2023. 1.

순천대학교
SUNCHON NATIONAL UNIVERSITY

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

1 휴 학

1. 신청기간

- 일반휴학: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
- 병역휴학: 수시 (입영일 한 달 전부터 **입영통지서** 수령 후 신청 가능)
- 질병, 임신・출산・육아, 창업휴학: 사유 발생 시

구분	등록금 납입여부	신청기간	비고
미등록휴학	X	2023. 2. 16.(목) 10:00 ~ 3. 28.(화) 18:00	수업일수 1/4
등록휴학	O	2023. 2. 16.(목) 10:00 ~ 4. 24.(월) 18:00	수업일수 2/4

2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일반휴학	해당없음
병역휴학	입영통지서, 소집통지서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기재) [택1]
질병휴학	4주 이상 병원진단서
임신·출산·육아휴학	임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출산·육아휴학)
창업휴학	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, 사업자등록증, 성적증명서

※ 병역휴학 신청 시 입영(예정) 사실 확인서 및 병무청 알림톡 캡쳐 화면은 인정 불가

3. 신청방법

- 향림통시스템 → [학사정보] → [학사관리] → [휴복학신청] → 휴학 선택 →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→ (제출서류 업로드) → [학적변동신청저장] → 진행상황 확인
- **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**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

4. 처리절차

■ 재학생의 휴학신청

재학생 〉 휴학 신청 〉 학과 승인 〉 최종 승인

■ 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

등록휴학생 〉 복학 신청 〉 복학 승인 〉 휴학 신청 〉 휴학 승인

■ 미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

미등록휴학생 〉 등록금 납입 〉 복학 신청 〉 휴학 신청

※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

5. 유의사항

■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

■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

■ 일반휴학은 **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**

■ **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(편입생은 4학기)**까지 사용 가능하며,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(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)

■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불가
(병역, 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은 신청 가능)

■ 학사학위취득유예자(졸업연기 및 수료연기)는 휴학 신청 불가

■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
(단, 국가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)

6.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유의사항

■ 수업일수 3/4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

※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서 병역의무/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예정

-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적 인정
-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,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
- 관련규정

교학규정 제60조 (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)

①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,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 복 학

1. 신청기간

- 2023. 2. 16.(목) 10:00 ~ 3. 28.(화) 18:00 [수업일수 1/4]

※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처리됨

2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병역복학	만기전역: 전역증, 소집해제증명서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기재) [택1] 조기복학: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,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귀가조치: 귀가조치증
일반복학	해당없음
질병복학	
임신·출산·육아복학	
창업복학	

※ 병역복학 신청 시 병역증 및 전역상장, 명예전역증서는 인정 불가

3. 신청방법

■ 향림통시스템 → [학사정보] → [학사관리] → [휴복학신청] → 복학 선택 →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→ (제출서류 업로드) → [학적변동신청저장] → 진행상황 확인

4. 처리절차

■ 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

등록휴학생	〉	수강신청	〉	복학 신청	〉	복학 승인

■ 미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

미등록휴학생	〉	수강신청	〉	등록금 납입	〉	복학 신청	〉	복학 승인

※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

5. 유의사항

■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**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** 반드시 **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**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

■ 미등록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**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** 반드시 **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**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

■ 복학예정생은 **수강신청 기간에** 반드시 **수강신청 완료 후 복학 신청**

※ 2023-1학기 수강신청: 2023. 2. 6.(월) ~ 2. 10.(금)

■ 병역휴학생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 시 **수업일수 3/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**되므로 출석일수 확인 후 복학 신청